

●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-366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2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수·위탁 분쟁조정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3.3.28일 공포, '23.9.29일 시행)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

2. 주요내용

① 시행령

가.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(제11조, 제12조, 제13조) 삭제

나. 별점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(안 제18조의2, 안 별표3)

다. 교육명령에 관한 별점기준을 규정함(안 제18조의3)

라. 별점의 부과기준,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별점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함(안 제27조의2제3호)

② 시행규칙

가. 기존 수·위탁 분쟁(사전)조정 신청서를 수·위탁 분쟁 요청서와 수·위탁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으로 분리하여 규정(안 제6조,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, 안 별지 제1호의3 서식)

나. 별점의 부과기준, 교육명령에 관한 별점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(제5조의4, 제7조, 별표) 삭제

다. 별점의 부과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별점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(제12조제2호)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의 “정보공개-행정·입법예고” 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*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
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
(전화 : 044-204-7798, Fax : 044-204-7929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(전화 044-204-7798, 팩스 044-204-79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